

# 발전추진위원회 규정

□ 제정 : 2017. 3.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수원대학교 중장기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임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및 권한) 본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기간 중 추진과정의 점검
2. 계획추진주체(해당부서)가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의 제시
3. 계획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결과를 관련부서장이 참여하는 합동회의에서 총장에게 보고
4. 부서장에게 소관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요청
5. 계획추진과정에 대한 점검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장에 대한 시정요구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보고 요청

제3조 (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2. 위원은 30인 이내로 하되, 부총장과 단과대학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임명직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 간사는 교원 또는 일반직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위원회의 추진계획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 (전담팀)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팀을 둔다.

② 위원회는 사업을 유지·보완한다.

제8조 (개정) 이 규정은 규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제정으로 종전의 대학발전계획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